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훈련 계획 및 평가			결재	담당자	안전관리 책임관
				유윤임	조현숙
훈련명	조리실에서의 불	훈련일시	2026년 8월 24일		
참가자	전체 원아 및 교직원	훈련진행 책임자	유윤임		
훈련종류	실제 훈련	대피시간	9분		
훈련 목적	· 화재 사이렌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상황을 인지한다. · 화재 시 대피 경로를 알고 교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피한다.				
비상대응상황 시나리오	조리실의 누수로 인해 전기 배선으로 물이 침투하여 약 10시경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경보기가 울림				
훈련 내용 (계획)					
대응 활동	평가항목	평 가(기술)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시도	소화기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는가?	소화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음.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였는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 하였음.			
각반의 영유아 대피 실시	교실 안에 남아있는 원아는 없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였는가?	마지막 대피하는 교사가 교실을 모두 둘러보고 영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함.			
	영유아는 질서를 지켜 대피를 하였는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 대피하였음.			
119 연락	어린이집 위치와 현재 상황을 119에 연락하여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휴대 전화로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설명 하였음.			
대피 시간 대피한 영유아 수	대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9분			
	대피한 영아의 인원파악을 하였는가?	대피장소에서 각 담임교사가 인원을 파악 후 전체인원 파악함.			
대피 후 부상자 사상자 확인	부상상태를 파악 후 부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대피 후 부상자 확인함.			
대피 훈련 사진		최종 집결지			
					
평가 및 개선사항	조리실에서 화재가 났음을 알리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를 하였다. 영아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고 교사를 따라 대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가 대피할 때 옆으로 자꾸 시선이 분산되어 앞을 보고 재빠르게 대피 해야 함을 말해주었다. 집결 장소에 모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대피 훈련을 회상하며 주의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하고 대피 훈련을 마무리 하였다.				

2026년 안전교육 실시현황

어린이집명 : 엄지어린이집

구분	교육일자(필수)	교육시간(필수)	교육아동수(선택)	비고
성폭력 예방교육	2026.08.03.~08.07	1시간	5명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6.03.30.~04.03	1시간	4명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2026.05.04.~05.08	1시간	4명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2026.03.03.~03.06	1시간	4명	(연간 10시간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2026.04.06.~04.10	1시간	4명	
	2026.06.01.~06.05	1시간	4명	
	2026.06.29.~07.03	1시간	4명	
	2026.08.10.~08.14	1시간	5명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등 보건위생 관리교육	2026.03.09.~03.13	1.5시간	4명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2026.03.16.~03.20	1시간	4명	
	2026.04.13.~04.17	1시간	4명	
	2026.05.11.~05.15	1시간	4명	
	2026.06.08.~06.12	1시간	4명	
	2026.07.20.~07.24	1시간	4명	
	2026.08.18.~08.21	1시간	5명	
재난대비 안전 교육	2026.04.27.~04.30	1시간	4명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026.05.26.~05.29	1시간	4명	
	2026.06.22.~06.26	1시간	4명	
	2026.07.06.~07.10	1시간	4명	
	2026.08.24.~08.24	1시간	5명	
교통안전 교육	2026.03.23.~03.27	1시간	4명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2026.04.20.~04.24	1시간	4명	
	2026.05.18.~05.22	1시간	4명	
	2026.06.15.~06.19	1시간	4명	
	2026.07.13.~07.16	1시간	4명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의거 의무 교육 기준/ ※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